

광전총국 TV애니메이션 방송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

2008-2-19 광전총국

2월14일, 광전총국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광전국, 신강 생산 건설병단 광전국, CCTV, CETV에 <광전총국 TV애니메이션 방송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에 의하면 2007년 전국 방송영상 시스템은 중앙의 중국 문화산업 발전과 번영의 정신과 총국의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을 발전시킬데 관한 약간의 의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관철 집행하고 정책 인도 강화, 산업 투입 증가, 방송 시스템 구축, 창작 관념 업그레이드, 자원 배치 최적화, 종합 개발 추진, 국산 애니메이션 생산 수량의 증가, 창작 질량의 제고, 산업 규모의 부단한 확대를 추진해 왔다고 하였다. 2007년 전국 범위 내에서 제작 완성된 국산 TV애니메이션은 총 186부 101900분으로서 2006년보다 23% 증가했다. 2007년도에 총국은 전국 TV방송기구에 33부의 우수 국산 애니메이션을 추천해 많은 우수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관중들의 환영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TV애니메이션의 방송 질서를 진일보 규범화 하고 TV애니메이션 방송 조정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위해 양호한 시장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을 통지한다:

1. 애니메이션 채널, 소아채널, 청소년채널, 아동 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채널은 계속 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송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위성채널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하고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해 국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더욱 확실하게 개설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사상도덕 건설에 사상이 깊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우수한 국산 애니메이션을 더욱 많이 제공하여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2. 2008년 5월1일부터 전국 각급 TV방송국의 모든 채널은 외국 애니메이션, 외국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정보 프로그램 및 외국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등의 방송 금지 시간대를 원래의 17:00-20:00에서 17:00-21:00로 연장하며 중외 합작 애니메이션은 광전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이 시간대에 방송 가능하다.
3. 각 애니메이션 채널은 매일 17:00-21:00 시간대에 반드시 국산 애니메이션 또는 국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각 어린이 채널, 청소년채널, 아동 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채널은 이 시간대에 반드시 국산 애니메이션 또는 자체로 제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며 국산 또는 수입 영화, 드라마를 방송해서는 안된다.
4. 각급 TV방송국이 해외 애니메이션 인형극, 애니메이션 인우극(人偶劇)을 수입 할 경우 반드시 광전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각급 TV방송국은 광전총국의 허가

가 없이 수입한 애니메이션 인형극, 애니메이션 인우극을 방송할 수 없다. 각급 TV 방송국은 매일 17:00-21:00시간대에 수입 애니메이션 인형극, 애니메이션 인우극을 방송할 수 없다.

5. 모든 국산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성급 이상 광파TV행정부문의 심사 허가를 통과하여 국산 애니메이션 발행 허가증을 취득한 후 TV방송국에서 방송할 수 있다. 합작 제작 애니메이션, 수입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광전총국의 심사를 받은 후 애니메이션 방송 허가증을 취득한 후 TV방송국에서 방송 가능하다. 각급 TV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발행 허가증이 없는 외국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수 없다.

6. 애니메이션 채널, 소아채널, 청소년 채널, 아동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채널은 매일 국산 애니메이션과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 비율 7:3이상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7. 각급 TV방송기구는 방송 기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국내외 애니메이션 제작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함으로써 영상을 구매 경로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국내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해적판의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 판권 유효기간이 지난 수입 애니메이션을 계속 국내에서 방송하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방송비준을 받지 못한 저작권 유효기간이 넘은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해 각급 TV방송기구는 일률로 구매하거나 방송해서는 안된다..

8. 각급 광파TV행정부문과 각급 TV방송국은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 채널, 소아채널, 청소년 채널, 아동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채널의 구축을 지원하고 정치력이 강하고, 업무능력이 강하며 태도가 단정한 간부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보급역량을 확대하고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구매와 제작 경비를 증가하여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촉진해야 한다.

9. 각급 광파TV행정부문은 소속 TV방송국 애니메이션 방송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감시 관리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국내외 애니메이션 해적판, 저작권 유효기간이 지난 수입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거나 제한된 시간과 양을 초과해 수입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는 행위에 대해 제때에 통보하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성급 이상 광파TV행정부문은 전문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인원을 구성해 애니메이션 방송 심사와 방송 감시 관리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10. 각 애니메이션 채널, 소아채널, 청소년채널, 청소년채널, 아동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채널은 빠른 시간 내에 이 통지 내용에 대한 조정방안

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각 성급 광파영상국은 관할지역 내의 애니메이션 채널, 소아채널, 청소년채널, 아동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한 채널에 제출한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CCTV가 소아채널에 제출한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상기 자료는 4월 1일전 까지 국가광전총국 선전관리사에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통지 내용을 각 관련 애니메이션 방송기구에 전달하여 엄격히 집행하길 바란다.